[서식 예] 대여금청구의 소(변제기 전에 일방적으로 일부 변제공탁한 경우

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대여금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〇 〇. 〇.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피고에게 금 30,000,000원을 이자 연 25%, 변제기 20○ ○. ○○. ○○.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.
- 2. 그런데 피고는 20〇〇. 〇〇. 〇. 변제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때까지의 이자와 원금만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로서는 변제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음을 이유로 수령거절하자 피고는 그 때까지의 이자와 원금만을 〇〇지

방법원 20〇〇금제〇〇〇호로 변제공탁 하였습니다. 그러나 피고로서는 기생물 이익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원고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(민법 제153조항), 원고는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습니다. 그 후 피고는 변제기까지의이자를 추가로 공탁하거나 지급한 사실 없이 변제기가 지나 지금에 이르렀습니다.

3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돈을 차용해 간 다음날인 20〇〇. 〇. ○.부터 다 갚을 때까지 약정이율 연 2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차용증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2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 20○○.
 ○.
 ○.

 위 원고
 ○○○
 (서명 또는 날인)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⊏☞소멸시효일람표,^^k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•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(대법원 1998. 10. 13. 선고 98다 17046 판결). 다만,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(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6다14616 판결),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게 될 뿐임(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2다12871 판결).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

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 왕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